탄 원 서

사건번호 2026고합553

사건명 내란중요임무종사

피고인 허석곤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7-1부 귀중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에 올립니다.

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혹이 엄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입니다. 언론사의 활동을 막기 위한 단전·단수 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그 경위를 밝히는 일은 중요합니다. 동시에 중대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과정에 등장한 모든 사람의 형사책임을 같은 무게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믿습니다.

허석곤 피고인이 당시 어떤 연락을 받았고, 그 뒤 무엇을 말하고 행동했는지에 관하여 공개된 재판 경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재판부가 보유한 기록 전체를 대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유죄는 그 사람 자신의 고의와 행위에 관한 증거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탄원서를 올립니다. 부디 이 원칙에 따라 허석곤 피고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신중하게 살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장관과의 통화, 내부 논의, 이후 연락을 각각 구별해 주십시오.

공개된 수사·재판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 37분경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화를 받았고, 특정 언론사와 관련해 경찰의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대응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문제 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영팔 당시 소방청 차장과 이 문제를 논의했고,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도 연락하였다는 내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연결은 결코 가볍게 볼 사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관의 말을 들은 것, 그 의미를 이해한 것, 실제로 같은 내용의 실행 지시를 하달한 것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피고인이 처음 들은 말과 이영팔 차장에게 전달한 말,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직접 한 연락은 각각 내용과 상대방,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 전화를 건 이유를 재난 상황과 인명피해에 대한 대비였다고 설명한 증언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그대로 믿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통화기록과 상대방의 진술, 실제 후속 행동을 통해 진위를 가려달라는 말씀입니다.

책임 있는 소방청장이라면 위법할 수 있는 지시를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행정상·직무상 평가와 형법상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의식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는 구성요건을 달리합니다. 그 경계를 구체적 증거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까지 함께 놓고 고의를 판단해 주십시오.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은 장관의 언급을 언론사 장악을 위한 단전·단수 가능성과 연결해 이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지시의 위험성을 전혀 몰랐다고 말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저 역시 그 부분을 외면한 채 피고인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단전·단수가 소방 업무인지 이영팔 차장과 주변 간부에게 물었고, 소방의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단전·단수로 인명 안전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지시의 의미를 이해한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판단하는 데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다는 사실과, 국헌문란 목적을 지닌 폭동에 의식적으로 가담하면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려 했다는 사실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물론 고의는 직접적인 자백이 없더라도 객관적 행동과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당시 인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가 이후 실제로 무엇을 지시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뒤이어 이루어진 연락과 공문 발송의 경위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입니다.

3. 짧은 시간에 공문이 발송된 사실과 실제 범죄 실행의 정도를 구분해 주십시오.

특검은 장관과의 통화 이후 이영팔 차장,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당직관을 거쳐 밤 11시 44분경 비상계엄 출동대비 태세 관련 공문이 관할 소방서에 발송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최초 통화에서 공문 발송까지 약 7분이 걸렸다는 시간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문서가 왜 작성·발송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문이 실제로 어떤 문구를 담았는지,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했는지, 기존 비상대응 업무와 무엇이 달랐는지, 피고인의 지시가 공문의 기안·결재·발송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의 2026년 5월 항소심에서는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선 소방서에 그에 대응할 특별한 준비 태세가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도 제시됐습니다.

이는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판단이므로 피고인의 내란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에 관한 객관적 판단 자료라는 점에서, 공문의 발송과 구체적인 범죄 실행 준비, 실제 단전·단수 여부를 혼동하지 않도록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4. 관련자의 유죄 판단을 피고인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었고, 2심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의 중대성을 강조한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판결이 곧 허석곤 피고인의 고의와 역할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석곤 피고인의 역할도 관련자의 행위와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이 계엄 이전의 계획에 관여했는지, 장관의 연락으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그 뒤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중요합니

다. 그 행동이 형법 제87조 제2호의 중요한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제91조의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인식이 인정되는지는 피고인 개인의 증거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별 책임을 따져보는 일은 앞선 특별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후 다시 기소에 이른 경위를 살필 때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전 처분은 무죄 판결이 아니며 새로운 기소를 당연히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번 공소에서 어떤 증거로 허석곤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인식이 증명된다는 것인지 충분히 심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맺음말 — 무죄를 요청드리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재판부. 언론과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엄중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중대한 사건일수록 한 사람의 유죄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직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탄원서를 올리는 이유도 허석곤 피고인의 행위를 그 자신의 증거로 끝까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부디 피고인이 당시 알고 있었던 내용과 실제로 한 행동을 세심히 심리하시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공정한 심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7-1부 귀중